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규약 동의안

의안 번호	2017 - 325
----------	------------

제안연월일 : 2017. 6. .

제안자 : 평창군수

1. 제안목적

- 가. 중부내륙중심권에 위치한 3개도 6개 시·군의 상호 교류협력과 친선도모를 목적으로 2004년부터 구성되어 공동발전을 위한 공동 관심사업 추진과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우호협력을 증진중에 있는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 나.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행정협력회 규약을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고 정당한 회원의 역할을 행사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규약명 :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규약
- 나. 구성 : 중부내륙중심권 지방자치단체 (3개도 6개 시·군)
- 다.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152조
- 라. 주요기능
- 1) 자치단체 간 공동관심사업의 개발추진 및 교류협력 활동
 - 2) 시·군정 각 분야별 시책의 공조
 - 3) 지역주민 상호간 친선도모와 이해 증진
 - 4) 민간단체의 교류촉진 관련사업 지원
 - 5) 기타 지역화합·발전에 관한 사항
- 마. 협력회 조직 : 회장 1(순번제, 現 봉화군), 회원 5, 실무위원회 4
- 바. 회의 : 정기회, 임시회

3. 주요 활동내역

- 가. 행정협력회 정기회 및 체육행사 개최 11회 : 2006~2017
- 나. 공동관심사업 정부 건의문(26건), 결의문(21건) 채택 정부건의
- 다. 회원시군별 대표축제, 국제행사 공동참여 및 농특산물 홍보 : 지속
- 라. 문화관광분야 협력사업 추진 : 문화관광 홍보물 공동제작 3회
- 마.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공동협력사업 추진
- 바. 2018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 협력을 위한 협약 체결 : 2017. 4. 12.

- 붙임 1. 협력회 규약(안) 1부.
2. 관련법령 1부. 끝.

[붙임 1]

중부내륙중심권행정협력회 규약

2004. 12. 09 제정

2011. 6. 28 개정

제1조(목적) 충청북도 제천시와 단양군, 강원도 영월군과 평창군, 경상북도 영주시와 봉화군은 상호 교류협력 및 주민 상호간 친선을 도모하고 지역주의 해소와 공동 관심사업의 적극 추진을 위하여 『중부내륙중심권행정협력회』 (이하 '협력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제2회(기능) 협력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1. 자치단체 간 공동관심사업의 개발추진 및 교류 협력 활동
2. 시·군정 각 분야별 시책의 공조
3. 지역주민 상호간 친선도모와 이해 증진
4. 민간단체의 교류촉진 관련사업 지원
5. 기타 지역화합·발전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협력회는 충청북도 제천시와 단양군, 강원도 영월군과 평창군, 경상북도 영주시, 봉화군으로 구성한다. 단, 본 협력회에 가입을 희망하는 자치단체는 협력회원의 만장일치로 추가 영입한다.

제4조(운영) ① 협력회의 회원은 제천시장, 단양군수, 영월군수, 평창군수, 영주시장, 봉화군수로 하고 의장은 윤번제로 호선한다.

② 의장은 협력회를 대표하고 회의 소집 등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6.28>

③ 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유고시는 차기 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6.28>

④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부시장·부군수가 대리회원으로 참석할 수 있으며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

제5조(회의) ① 협력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년1회로 하고 매년 하반기 중 개최한다.

③ 임시회는 회원의 요구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개정 2011.6.28>

제6조(사무처리) ① 협력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회의운영실무위원회」 「관광협력실무위원회」 「지역(도시)개발협력실무위원회」 「한방클러스터실무위원회」 를 두며 각 실무위원회별로 실무위원 1인과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② 회의운영실무위원은 각시군의 기획담당부서장으로 간사는 기획담당으로 하

고, 관광협력실무위원회는 관광 업무를 관장하는 담당과장을 위원으로 관광업무 담당을 간사로 하며, 지역(도시)개발협력실무위원회는 지역(도시)개발업무를 관장하는 담당과장을 위원으로 지역(도시)개발업무담당을 간사로 하며, 한방클러스터실무위원회는 한방관련(농정, 보건사업, 투자통상, 보건, 경영개발)업무를 관장하는 담당과장(소장)을 위원으로 한방 관련 담당(농정기획, 보건행정, 생태특화, 인삼복합)을 간사로 한다.

③ 협력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개최 전후에 실무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 소속 자치단체의 회의운영실무위원으로 한다.

⑤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협의안건의 실무검토 의견서를 본 협력회 의장에게 제출하고 협력회 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8>

제7조(자문위원) ① 협력회는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관계전문가 중에서 협력회의 승인을 얻어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6.28>

제8조(회의록 작성) 협력회의 간사는 회의록 등 의결·활동 사항을 작성 관리한다.

제9조(합의사항 처리 등) 협력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중부내륙중심권행정협력회 관련 사무 추진에 있어 우선하여 추진한다.

제10조(경비부담) ① 협력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 경비는 회의주관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협력회에서 공동으로 수행하는 협력사업의 경우에는 협력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경비를 분담한다.

제11조(회계) 제10조 제1항 단서규정 및 제2항에 의하여 협력회 경비를 분담할 경우에는 회계 상황을 협력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규약개정) 이 규약은 협력회 회원 전원의 찬성을 얻어 개정 할 수 있다.

제13조(보칙) 본 규약 이외의 사항은 협력회의 합의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자치법

[시행 2017.4.18.] [법률 제14768호, 2017. 4. 18., 일부개정]

제2절 행정협의회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제153조(협의회의 조직) ①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154조(협의회의 규약)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4.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5.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6.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